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4858
등록일자	2016.2.29.
결재일자	2016.3.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노보람	나윤수	최선희	김종두	조인동	03/02 문석진
협 조					

2016년도 새마을장학금 지원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
서 대 문 구
자치행정과

2016년도 새마을장학금 지원 계획

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

I

지원 개요

-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
- 지원대상 :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10명
- 지원시기 : 연 2회(4월, 9월)
- 지원금액 : 1인 / 연1,792,000원(분기별 448,000원)
- 소요예산 : 총 18,008천원
 - 장 학 금 : 17,920,000원 (448,000원 × 10명 × 4회)
 - 장학증서 : 88,000원 (8,800원 × 10명)

II

지원 현황

연도별 지급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연 도 별					비 고
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
새마을장학금 (고등학생)	17,473 (10명)	17,473 (12명)	17,518 (11명)	17,920 (10명)	7,994 (6명)	* 15년 지급인원 감소

Ⅲ

지원 계획

장학생 추천

- 추천자 : 새마을지도자구협의회장, 새마을구부녀회장
- 추천인원 : 10명 내외(예산범위 내에서 정함)
- 선정기준 :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·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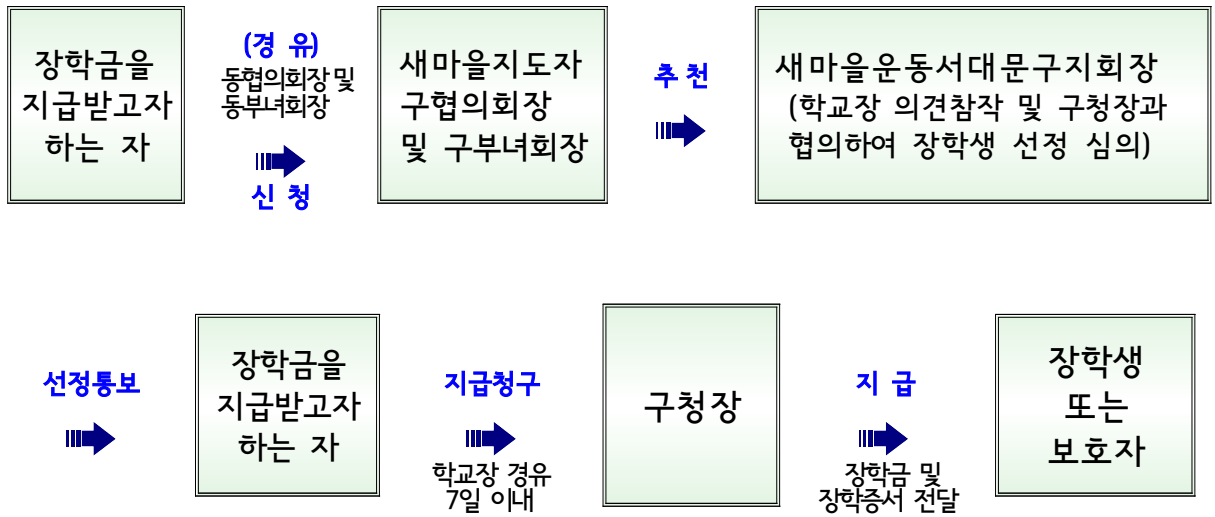
종 류	내 용
유공자 장학금	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지도자의 자녀
우등생 장학금	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
특기생 장학금	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- 제외대상 :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제외

선정방법 :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장이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·심사하여 선정

- 「상훈법」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-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-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- 기타 유공지도자의 자녀

□ 선정절차



□ 제출서류

-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(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)
- 학교장의 추천서 1통
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

□ 지급내역

- 지급시기 : 연 2회(반기별)
- 지급인원 : 약 10명 내외
- 지급예상액 : 1인당 1,792,000원 (수업료, 학교운영지원금)

※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

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IV

지급 방법

-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장학생 선정심의에서 선정된 장학생에게 연 2회지급
-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(계좌이체)
- 구청장과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장 공동명의의 장학증서 전달
- 지급정지 사유
 - 장학생의 보호자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나 지도력을 상실하여 사퇴 할 경우
 -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 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/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
 - 장학생이 퇴학, 정학,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V

장학증서 전달식

- 일 시 : 2016년 4월 중
- 장 소 : 기획상황실
- 전달인원 : 고등학생 약 10명
- 장학증서 : 구청장과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장 공동명의 수여

VI

소요 예산

- 예산 총액 : 금18,008,000원
 - 장 학 금 : 금17,920,000원(448,000원 × 10명 × 4회)
 - 장학증서 : 금88,000원(8,800원 × 10명)

예산과목

- 장학금 :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,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,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, 일반보상금, 장학금 및 학자금
- 장학증서 :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, 공익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,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VII

행정사항

- 장학생 선정 기준 통보 및 추천 의뢰 :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
- 장학금 이중 수혜 여부 확인 : 추천대상자 재학학교와 구청 타부서 확인
- 분기별 장학금 지급 시 재학 여부 및 장학금 지급 배제 사유 발생 여부 확인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2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1부. 끝.